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95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이헌승·이성권·김예지

김 건 · 김상훈 · 박덕흠

유용원 • 백종헌 • 정성국

김재섭 · 김승수 · 김선교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보안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유출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여 제도상 신고 기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 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신고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현장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인 72시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를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로, "되었을 때에는"을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기,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① · ② (생 략)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		
	<u> </u>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u>	③ <u>제1항에</u>		
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u>을 때에는</u> 개인정보의 유형, 유	<u>된 때부터</u>		
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	<u> 24시간 이내에</u>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u>지체 없이 보호위원회</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u>보호위원회</u>		
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			
술을 지원할 수 있다.			
	<u>.</u>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	4		
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u>시기, 방법</u> , 절차 등에	<u>방법</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